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8

September 8,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셨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8.)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8. 2.	• (이슈)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 (주요내용) 공정위는 최근 3개월간(2022. 5. 1. ~ 2022. 7. 31.)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8. 3.	• (이슈)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3. 1. 1.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 11.	• (이슈)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관련 뉴스레터 보기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및 배포 8. 12.	• (이슈)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및 배포 • (주요내용)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

이슈	주요 내용
<u>공정위, 업무보고</u> 8. 16.	•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발표 → 관련 뉴스레터 보기
<u>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u> 8. 17.	• (이슈)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2. 8. 17.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
<u>공정위,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u> 8. 18.	• (이슈)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 8. 24.부터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 총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
<u>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u> 8. 19.	• (이슈)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 (주요내용) 2022. 8. 19.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이 개최됨
<u>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u> 8. 22.	• (이슈)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u>공정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쟁법 제도 설명회 개최</u> 8. 24.	• (이슈) 말레이시아 경쟁법 제도 • (주요내용) 공정위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쟁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함
<u>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u> 8. 25.	• (이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u>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u> 8. 30.	• (이슈)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시행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2022. 8. 30.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야 정책 토론회 개최 8. 30.	• (이슈) 가맹·대리점 분야 정책 토론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8. 30.	• (이슈)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 8.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임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 개최 9. 1.	• (이슈)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 • (주요내용)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의 첫번째 회의가 개최됨
II. 주요 소식	
행안부,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 결정 8. 2.	• (이슈) 지주회사과 폐지 • (주요내용) 행안부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대기업, 지주회사 산하 CVC 설립 본격화 8. 8.	• (이슈) 지주회사 CVC 설립 • (주요내용) 지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근래 대기업 지주회사 산하 CVC 설립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8. 16.	• (이슈) 납품단가 연동제 • (주요내용) 대기업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이 9월 시작됨
경총, 경영활동 관련 규제혁신 과제 120건 정부 건의 8. 22.	• (이슈) 경총 규제혁신 과제 건의 •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과제 120건을 정부에 건의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금액 기준 상향 검토 8. 23.	• (이슈)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금액 기준 • (주요내용)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거래금액 기준을 최대 10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짐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전년 동기 대비 감소 8. 23.	• (이슈)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 (주요내용) 공정위에 대한 의무고발 요청 접수 건이 금년 1~7월 2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

이슈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내 형벌 조항 등 기업인 형사 처벌 조항의 비범죄화·합리화 추진 8. 26.	• (이슈) 기업인 형사 처벌 조항의 합리화 • (주요내용) 기재부, 법무부는 공정거래법 내 형벌조항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한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
국회 민생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논의 8. 29.	• (이슈)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논의 • (주요내용)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짐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빅테크의 경쟁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 의지 표명 9. 2.	• (이슈)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발언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2022. 9. 2.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빅테크의 경쟁방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III. 국회 발의법안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전해철 의원안) 국회제출</u> 8. 4.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환노위 소속 전해철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u>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염태영 의원안) 국회 제출</u> 8. 10.	• (이슈)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진선미 의원안) 국회제출</u> 8. 17.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기재위 소속 진선미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성만 의원안) 국회제출</u> 8. 18.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만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진선미 의원안) 국회제출</u> 8. 18.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기재위 소속 진선미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윤재옥 의원안) 국회제출

8. 31.

- (이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외통위 소속 윤재옥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8)

I. 보도자료

1. 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8. 2.)

- 공정위는 최근 3개월간(2022. 5. 1. ~ 2022. 7. 31.)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
- 2022. 7. 31.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886개이며, 위 기간 중 35개 집단이 총 71개사를 소속회사로 편입
 -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32개, 분할 8개), 지분취득(26개), 기타(5개)임
- 같은 기간 중 28개 집단이 총 71개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함
 - 계열제외 사유는 독립경영인정(27개), 흡수합병(16개), 지분매각(13개), 청산종결(8개), 기타(7개)임

2.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8. 3.)

- 공정위는 2022. 5. 3.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공정위고시 제2022-15호)
- 이는 2023. 1. 1.부터 시행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 추가
 -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 제시

3.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 11.)

- 공정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주요 내용)** (i)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ii)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고 (iii)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되도록 하고 (iv)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매출대비 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함 → [관련 뉴스레터 보기](#)

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및 배포 (8. 12.)

-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

- 그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연동계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음
 - **(적용 대상)**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함
 - **(계약 방식)**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여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함

5. 공정위 업무보고 실시 (8. 16.)

-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뉴스레터 보기](#)

[업무보고 주요 내용]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에서 절차적 권리 강화**
 - 피조사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
 - 자료제출 등 조사과정에 대한 이익제기 절차 신설
 -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 확대
 - 심의속개 활성화 및 미고발사유 의결서 명시
- **설득력 있는 공정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화**
 -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
 -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심사지침) 마련
 - 정책수요자·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을 충실히 반영
- **선택·집중을 통한 법집행 효율성 제고**
 -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 활성화
 - 공정위 사건처리에 있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
 - 단순 질서위반행위(가맹·대리점)의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
 - 장기사건 특별점검 등 철저한 사건 처리기한 관리

●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 **불필요한 규제 개혁**
 - 진입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규제 혁파
 -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 중점 추진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용**

-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 완화

– **M&A 심사제도 개편**

- 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 확대
-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 개편

● **시장 반칙행위 근절**

–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정**

-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차단

– **담합 근절**

-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 집중 감시
-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개선

–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

-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집중 점검
-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법 위반 예방교육 우선 실시

– **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제도 운용**

-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
-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지침 개정)
-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 제고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 **납품단가 조정**

- 시장실태·법위반행위 조사 등 정책수단 최대 활용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배포(중기부 합동) 및 체결선포식 개최, 인센티브 제공, Best Practice 공유 등 시장 자율적 연동 확산
-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 검토

– **중소기업 기술탈취 차단**

-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
-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등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플랫폼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 보완**

-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 구체화
- 배달앱, 오픈마켓 등 주요 업종별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 지원
-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CP평가시 가점) 제공

–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시정**

-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중점 감시
-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 금지

●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만행위 집중 점검**

- SNS 뒷광고,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Dark Pattern)’ 감시 강화
- MZ세대 관심 분야(게임 아이템 · 명품 커머스 등) 불공정행위 시정

–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
-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 수립

– **국민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

-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 전기차, 5G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6.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8. 17.)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i)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ii) 2022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iii)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iv)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 의결함

7. 공정위,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 (8. 18.)

- 공정위는 8월 24일부터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총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
 - 2차 실태조사에서의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란 (i)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클라우드 고객사, (ii)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iii)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를 의미
-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해왔음
 - 1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는 이메일로 실태조사 설문 참여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i)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ii)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으로 구성됨
- 클라우드 분야 1, 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12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

8.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8. 19.)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기업이 참석하여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운영 계획 및 자율규제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분과별 운영계획은 임시 방안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회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데이터·AI 분과)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전문가가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됨
 - (ESG 분과)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 및 자율적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
- 공정위, 기재부, 과기부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의견을 청취함
- 본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하여 분과별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임

9.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8. 22.)

- 공정위는 지난 8. 12. 제정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할 계획임
 - **(신청 자격)**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
 - **(신청 방법)** 8. 22. 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 접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체결(예정)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제출.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의 제한은 없음
 - **(선정 요건)** ①신청 당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②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할 기업으로서 그 체결을 서약한 기업
 - **(참여기업 역할)** 참여기업은 성실히 자율운영 계획을 이행하고, 연동계약이 2차 이하 협력사에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
 - **(인센티브)**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
- 공정위는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을 희망하며, 이러한 자율적 참여를 통해 기업별 거래실태에 맞는 연동계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10. 공정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쟁법 제도 설명회 개최 (8. 24.)

- 공정위는 8. 24.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의 경쟁법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
-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추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의 경쟁법 설명 책자(2021. 6. 발간) 개정 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힘

11.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 25.)

-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주요 내용)** (i)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는 규정의 신설 (ii)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범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의 상향 조정 (iii)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권자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및 대행신청 절차 관련 규정 신설 (iv)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의 결과를 개찰 후 즉시 당해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는 규정 신설 (v)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 공시 규정 신설
- **(기대 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하도급 대금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12.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8. 30.)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가 8. 30.부터 시행되었음
 -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면제)**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사이의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고 납품업자로서는 납품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를 위해, 유통업자가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시행령 별표1, 과징금 고시)
*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 **(기타 용어 정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 등의 용어를 구분한 것과 같이,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음(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및 제5조)
 -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등의 정비)**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i)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ii)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였음(과징금 고시)

13. 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야 정책 토론회 개최 (8. 30.)

-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제1부에서는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이라는 주제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적정 제재 수준에 대한 검토’, ‘가맹사업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간 협력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2부에서는 ‘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이라는 주제로 대리점계약서 교부 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의 발표, ‘대리점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간 협력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음

14.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8. 31.)

- 공정위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
-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 및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15.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 개최 (9. 1.)

-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사업자) 및 종사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는 1부 오픈마켓 분야, 2부 배달앱 분야로 구성되었고, 주요 오픈마켓·배달앱 사업자 및 플랫폼 협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러한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공정위,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방통위, 농식품부 등)도 참여
-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갑을 분과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와 함께 자율규제 방식으로 풀어갈 업종별 논의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짐
-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 플랫폼 시장의 상생 촉진 및 거래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제시함

II. 주요 소식

1. 행안부,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 결정 (8. 2.)

- 행안부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지주회사과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전환된 총 167개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의 수립·운용, 제한행위 규정 위반 감시·적발 등을 전담하던 조직임
-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7년 대기업 규제 정책 일환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2021년 정규조직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달리 지주회사과는 행안부의 조직진단 평가에서 평가기간이 1년 연장된 이후 내달 말로 폐지가 결정되었음. 행안부는 조만간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공정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더라도 지주회사 관련 중요 업무는 기업집단국 내에서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2. 대기업, 지주회사 산하 CVC 설립 본격화 (8. 8.)

-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산하에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함. 이에 따라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산하 CVC 설립이 제한되었으나, 지난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CVC 설립이 허용됨

3.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8. 16.)

- 대기업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됨
- 정부는 시범운영에서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기업 간 자율에 맡김
- 다만,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연동조건 및 제재조치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4. 경총, 경영활동 관련 규제혁신 과제 120건 정부 건의 (8. 22.)

- 경총은 8. 19.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 과제를 정부에 제안함
- 혁신과제는 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 총 120건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공정거래와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내부거래 규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법령 수준으로 완화
 - (지배구조 관련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 상향)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지난 20년간 동결된 지배구조 관련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 상향 조정
 - (사외이사 결격요건 완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완화

5.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금액 기준 상향 검토 (8. 23.)

-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 거래금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최대 2배인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 현재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의결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제26조), 동법 시행령은 대규모내부거래의 규모를 ①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②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음(제33조 제1항)
- 공정위는 금년 내에 위 방안을 포함하여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6.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전년동기 대비 감소 (8. 23.)

- 공정위가 8. 22. 제출한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의 의무고발 요청 접수가 금년 1~7월 2건으로, 동기 기준 2020년 16건, 2021년 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함
- 최근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사건 별로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업무보고 하였음

7. 공정거래법 내 형벌 조항 등 기업인 형사 처벌 조항의 비범죄화·합리화 추진 (8. 26.)

- 기재부, 법무부는 공정거래법 내 형벌조항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한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목적)** 활발한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 조항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을 행정 제재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함
- **(주요 내용)** (i)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 (i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규정을 벌금 부과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iii)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벌금 부과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 **(기대 효과)**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8. 국회 민생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논의 (8. 29.)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방안을 각각 보고함
-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착수되었으나,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전이라도 원·하청 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면, 다음달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협조를 당부

9.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빅테크의 경쟁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 의지 표명 (9. 2.)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2022. 9. 2.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장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이어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을 개선 대상으로 꼽음
- 또한 총수 일가에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등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임

III. 국회 발의법안

1.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전해철 의원안) 국회제출 (8. 4.)

- 국회 환노위 소속 전해철 의원은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지하고자 근거를 신설(안 제12조 후단)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염태영 의원안) 국회 제출 (8. 10.)

- 국회 산자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광고주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의 소위 ‘뒷광고’와 같은 기만행위나 거짓광고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침에 의존하는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을 추천·보증한 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2조 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9조제3항) 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3.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진선미 의원안) 국회제출 (8. 17.)

- 국회 기재위 소속 진선미 의원은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하여 (i)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2항), (ii)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100분의 3이내의 범위)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며(안 제16조의2제12항 신설), (iii)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안 제25조제1항)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4.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성만 의원안) 국회제출 (8. 18.)

-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만 의원은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이 급등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i)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2항), (ii) 원사업자는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야 하나,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에 기재된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며(안 제15조의2 신설), (iii)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제1항)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5.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진선미 의원안) 국회제출 (8. 18.)

- 국회 기재위 소속 진선미 의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나갈 수 있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하도록(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등)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6.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윤재옥 의원안) 국회제출 (8. 31.)

- 국회 외통위 소속 윤재옥 의원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CVC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i) 외부자금 조달 제한 및 해외투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ii)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 외 벌칙 규정을 삭제(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제5호라목, 제124조제1항제6호 삭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